

2008. 6.

수 신 : 제천시의회 의장

제 목 :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위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4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불 입 1. 발의의원 서명서 1부.

2.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발의자 : 양순경 의원 (서명도록 날인)

외 4인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발의서명서

의원성명	서명 또는 날인	비고
양순경	양순경	
김우기	김우기	
강현삼	강현삼	
백선희	백선희	
김기중	김기중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62
------	------

발의연월일 : 2008. 6. 5.
발 의 자 : 양순경의원외 4인

1. 제안이유

올림픽스포츠센터내 실내수영장이용자 중 15세 이상 55세이하 여성의 수영장 사용료를 일부 감면해서 남녀의 신체 특성에 의한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여 사회통합과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골자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별표 1】 제천시 체육시설 사용료 (2) 이용료의 비교란에 실내수영장 이용자 중 월회원으로 등록한 15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 이용료의 10%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붙임 1.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천시 체육시설 사용료 (2)이용료의 비교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실내수영장 이용자 중 월회원으로 등록한 15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 이용료의 10%를 감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1】 제천시 체육시설 사용료 (2) 이용료</p> <p>1. ~ 5. (생략) 6. (신설)</p>	<p>【별표 1】 제천시 체육시설 사용료 (2) 이용료</p> <p>1. ~ 5. (현행과 같음) 6. 실내수영장 이용자 중 월회원으로 등록한 15세 이상 55세이하의 여성에 대하여 이용료의 10%를 감면한다.</p>

관 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